

韓國 女性團體의 兒童福祉活動의 實態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hild Welfare Activities in the Korean Women's Organizations

淑明女子大學校 兒童研究所
研究員 李 素 希
The Research Institute on Children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er So Hee Lee

<目 次>	
I. 序 論	3. 研究期間
II. 研究方法	III. 研究結果
1. 研究方法	IV. 分析 및 論議
2. 研究對象	V. 結論 및 提言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shed additional light on the national diffusion process and interaction of welf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mothers. The central hypothesis examined is the following; In general, the implant of social welfare system is first consider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own socio-economics, and diffusion process of welfare services tends to occur faster in countries with open societies than in countries where entry barriers are high and society rankings rigid.

The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in several ways.

Attention is concentrated on the agency of woman in the belief that an in-depth case study of one field can yield more insight than a less detailed investigation embracing a number of social welfare systems.

The agency of woman is selected for several reasons.

a) It is important the agency of woman alone produce more effective than services affecting both the child welfare and women's liberton gradually.

Moreover, these services will form the heart of mother's welfare.

b) The services of women's agency is gradually wide spread, since a role of government is still negligible before a full realization of economic income.

c) The services of women agency is a prime example of a social welfare.

d) Statistical data and other information are more readily available.

One of major findings of our study is the existance of the barriers inhibiting child welfare from "motherhood cult".

Despite all the distinct advantages for mother and child, social attitudes appear to be some resistant on child welfare system among men and women-even the agenices of women.

What is suprised is the extent of the awareness that strategies of women's agency to liberate woman and to increate activities of women involve the strategies to liberate child.

The conviction that solving application problems for child welfare in line with the activities of agency by women offer greater freedom and more advantage to mother are not apparent on the data collected from 18 of multi-functional agencies in our country.

There are little sign that such agencies cooperate toward attainment of common goals.

The intensive early focus of the movement on consciousness-raising is a necessary beginning and such efforts by women's organizations would help both in the continuous evolution of women and child.

Some of the agencies offer a variety of services to women and children, others are specialized in that they offer fewer services or even only one.

Social welfare agencies giving service to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re identified by various names-usually women service and child welfare-from govern mental agency and voluntary public agency to foreign aided.

What is totally missing, however, is an integrated synthesis of child welfare program Through women's agency.

Social changes to occur, but delineation of appropriate and comprehensive social policy is also necessary at this point since efforts, social changes and polices must be well coordinated and focused, as well as mutually supportive and reinforcing.

I. 序 論

1948년 U.N이 선포한 인권선언 제22조와 우리나라에서 개정 공포한 헌법 제30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福祉社會의 구현에 최대한의 노력을해야 한다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실제 현재의 국가들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경제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까지 직접, 간접으로 개입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에도 財源이나 人力需給面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이 원하는 충분한 要求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으며 이것은 兒童福祉부문에 도 마찬가지로 통용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兒童福祉의 定義——모든 아동들이 건전하게 成長發達할 수 있도록 國家나 地方 公共團體 및 地域社會의 民間團體에서 서로 협력하여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동복지활동의 主體를 國家와 民間團體로 대별하고 있다.

아동복지활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혹은 사회 민간단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냐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단언하기 어렵고 각 활동의 性格에 따라 달리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원칙상 국가가 책임지며 민간단체는 「아세아에 있어서 국가계획과 발전에 있어 兒童과 靑少年」이란 1966년도 태국 방콕회의의 결론처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모든 계획이 全的으로 政府의 基金이나 기

관에 의존할 수 없으며 人的이나 金錢적인 民間資源의 동원이야말로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하였듯이¹⁾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기능의 補完 및 強化策으로써 중요한 활동의 의를 갖는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활동은 外國의 援助 및 뜻있는 민간인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그나마 지금은 外援마저 감소해가고 있는 추세이고 경제개발 및 과도한 國防豫算의 투여로 사실상 국가가 兒童福祉부문에 큰 힘을 쏟을 여건이 충분치 못한 편이다.

앞으로 정부가 아동복지를 포함한 제반 社會福祉부문에 주력을 기울이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立法的 政策的 노력에 의한 아동복지활동은 쉬어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의 自發的 專門的 노력에 의해 접근해 나가는 일도 의의있는 일이며, 이를 통한 社會行動化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동은 자신의 요구나 權益을 위해 투쟁하거나 社會行動化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며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아지고 이에 수반되는 兒童養育의 문제가 여성 문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문제는 아동자신 뿐 아니라 여성문제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힘으로써 아동복지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은 兒童發達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며 養育의 1차적인 책임을 지므로 여성들의 조직체인 女性團體에서 여성문제와 결부시켜 아동복지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意義있는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지금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성단체의 아동복지활동의 實態를 조사 분석하여 앞으

1) 張仁協, 兒童福祉研究, 壽文社, 서울, 1971, p.134.

로 보다 나은 아동복지활동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여 1차적으로는 아동복지증진을, 2차적으로는 兒童養育과 관련된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II. 研究方法

1. 연구방법

여성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본연구자가作成한 설문지에 의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2. 연구대상

국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성단체들이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단체의 활동이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韓國女性團體議會에 가입되어 있는 17개 단체와 禮智院을 합한 18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로써 연구대상이 된 단체는 대한기독교 여자결제연합회, 대한 YWCA 연합회, 대한여학사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중앙부녀회, 가정법률상담소, 주부클럽연합회, 향군부녀회, 카톨릭여성연합회,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법태평양 동남아시아 여성협회, 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 한국부인 상조회, 한국여성생활연구회, 한국 우먼스클럽, 새여성회

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된 18개 여성단체 중 어떤 형태로든지 실제적으로 아동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8개 단체에 불과하여 자연히 실제적인 조사단체수는 8개 단체로 제한되어졌다.

3. 연구기간

1978년 10월~1979년 6월

III. 研究結果

① 女性團體로서 兒童福祉活動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5개 단체(28%)가 응답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兒童의 權益保護를 위해
- Y의 目的에 따라
- Scout의 精神에 의하여
- 兒童福祉의 향상을 위해
- 문제아동의 예방과 건전육성을 위해

② 宗教理念과 活動目的과의 관련성 여부에서는 4개 단체(22%)가 응답하였으며 이 4개 단체는 모두 宗教團體 및 宗派의 후원 단체로서 宗教的 理念과 兒童福祉活動의 목적과 관련을 지우고 있다고 하였다.

③ 현재 실시하고 있는 兒童福祉活動의 프로그램은 8개 단체(44%)가 응답하였으며 다

<표 1> 실시중인 兒童福祉活動 프로그램

	프 로 그 램	실 시 시 기	대 상 아 동	지 역
1.	세미나	어린이날		서울시
2.	심포지엄	어린이날(5월) 어린이해		
3.	급식비보조	매월 1회	국민학교 아동	서울
4.	인성검사 및 적성검사	매월 1회	"	"
5.	이혼부모의 자녀상담 및 아동문제 연구	언제나	이혼부모의 子女 및 문제아동	전 국

6.	고아대상 학습지도	매주 목요일	고 아	강남구 잠원동지역
7.	유치원 및 탁아소운영	매 일	만 4세이하의 빈민가 아동	서울, 부산, 오산
8.	탁아소 방문	X-Mas	그때 그때 따라	
9.	무의촌 진료활동	여름철	윤번제도 매년 3개道씩	전 국
10.	놀이터 시설 보조	놀이터시설 할 때마다		서울
11.	모금활동	X-Mas, 부활절		서울

음과 같다.

④ 예전에 실시하였던 아동복지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선 4개 단체 (22%)가 응답하였다.

⑤ 지금 실시하고 있으나 폐지하고 싶은 아동복지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8개 단체 (44%)가 응답하였는데 폐지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실시하였던 프로그램과 중단한 이유

	프 로 그 램	실시시기	대상 아동	실시 지역	중단 이유
1.	탁아아동 돕기	X-Mas	근로부모의 자녀	서울시	재원부족 실시요원 부족 시설부족
2.	아동교육 및 상담	신학기초	초, 중, 고 아동 및 학생	"	재원부족 시설부족
3.	놀이터 지도	토요일	빈민가 아동	서울시내 공원	재원부족 실시요원 부족
4.	아동 및 청소년 문제 연구	매 년	전 국	전 국	

<표 3> 계획중인 아동복지활동 프로그램

	프 로 그 램	실시 시기	대상 아동	지 역	지역사회의 후원 내용
1.	아동보호법 제정촉구		전국의 아동	전국의 아동	재정 및 마스크 협조
2.	놀이지도		빈민가 아동	아직 미선정	학생(후원자) 동원협조
3.	국제친선 어린이 예술대회		세계의 아동	세 계	재정지원 및 회원의 적극적 참여
4.	특수대원(지체부자유아동)의 야영대회		전국의 아동	전 국	자원자 후원 및 회원의 참여
5.	결손가정의 아동을 위한 위탁사업		국민학교 아동	전 국	재정지원, 자원자후원 마스크 협조

⑥ 앞으로 계획중인 아동복지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개 단체(28%)가 응답하였다.

⑦ 아동복지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8개 단체(44%)가 응답하였는데 조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財政형편에 대해 8개 단체중에서 충분하다고 답변한 단체는 2개 단체로서 응답단체의 25%였으며 부족하다고 답변한 단체는 6개 단체로서 응답단체의 75%였다.

財源의 出處에 대해서는 會費에 의존하는 단체가 6개 단체로서 응답 단체의 75%였고 회비 및 찬조금이나 후원금에 의존하는 단체가 4개 단체(50%)였다.

2. 實事要員의 數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응답한 단체는 8개 단체중 2개 단체였으며(25%) 부족하다고 응답한 단체는 8개 단체중 6개 단체였다(75%). 實事요원의 資質에 대해서는 좋다고 응답한 단체는 8개 단체중 3개 단체(38%)였으며 보통이다라고 한 단체가 2개 단체(25%)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단체는 3단체(38%)였다.

3. 아동복지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형편에 대해서는 8개 응답 단체중에서 충분하다고 한 단체가 2개 단체(25%)였고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단체가 6개 단체(75%)였다. 참고로 支部가 결성되어 있는 단체는 8개 단체중에서 5개 단체였다(63%).

⑧ 他 단체와의 협조여부에서 협조를 원하는 단체는 8개의 응답 단체중 3개 단체였으며(38%) 협조내용은 자료교환 및 공동활동이었고 협조를 원하는 단체는 한국행동과 학연구소, 가족협회, 법무부, 기타 학교의 연구소였다.

⑨ 募金活動의 실시 여부: 모금활동을 실시했던 단체는 3개 단체로서 X-Mas, 부활절,

어린이날에 바자회, 1일 다방, 자선 음악회를 통해 실시하였다.

IV. 分析 및 論議

1. 女性團體의 兒童福祉活動의 實事목적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中 부분적으로나마 아동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8개 단체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敎養과 資質향상을 위한 활동과 1~2단체에서 消費者保護 및 女性의 權益을 위한 활동을 행하고 있어 사실상 여성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복지활동은 극히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아동복지활동을 전혀하지 않고 있으며 계획하고 있지 않는 단체의 대부분이 오직 女性問題만을 다루고 싶을 뿐 아동복지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향을 설문지에 의한 면접의 거부로써 보여 주었는데, 이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社會學的인 배려가 요청되는 여성문제로서 1차적인 兒童養育의 책임, 충분한 敎育의 기회, 經濟的 독립의 가능성 취득 및 고용의 기회, 性別의 차이에 의한 平等意識 등²⁾을 지적하고 있음을 볼 때 兒童의 문제는 중요한 여성문제의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兒童保護施設의 설치(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집에 해당함)는 하루종일 자녀를 돌봐야 하는 책임감과 피로감에서 일시 벗어나 어머니에게 자유로움을 안겨주고 어머니 자신이 개인으로써 自我實現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아동 자신도 一方的이고 直接的인 보호와 감독에서 벗어나 또래의 아이들

2) Constantina Safilios Rottischild, Woman and Social Policy, Prentice-hall inc, New Jersey, 1974, pp. 18~66 첫줄 요약

과 어울리며 또 다른 몇 명의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³⁾.

더구나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아지고 職業을 가진 기혼여성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兒童養育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이것은 아동 자신의 문제이고 여성자신의 문제이며 人力개발의 사회흡수라는 사회문제로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아진다. 여성문제라는 것은 여성자신의 내부속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것이므로 여성들의 자질 및 교양을 향상시키고 權益을 보호하며 社會에 봉사, 기여하는 여성단체의 여성문제에 대한 판별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보며 社會개발에 참여의 폭을 넓히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2. 宗教理念과 兒童福祉活動의 관련성 여부

현재 아동복지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8개 단체중 4개 단체가 종교 단체이거나 후원단체로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民間團體 兒童福祉活動이 주로 外國의 宗派나 후원단체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경향이 女性團體의 활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프로그램의 性格이므로 검토가 뒤따라야겠으나 현재 실시중이거나 앞으로 계획중인 여성단체의 아동복지활동 프로그램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3. 현재 실시중인 아동복지활동 프로그램 <표 1>

① 세미나, 學術 및 一般主題의 심포지움; 여성의 아동양육 및 교육에 대한 再認識의 고취 및 社會의 아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社會行動化하는 데 좋은 역할을

3) 전제서, p.19

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진다.

단 어린이날이나 어린이달, 어린이해 특별히 갖는 一時的이며 전시적인 行事로 머무는 경향에 대한 再考가 요청된다고 본다.

② 人性 및 適性檢査는 檢査의 性格으로 보아 民間團體에서 실시하는 것보다 전문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느껴진다.

때문에 研究所와의 共同協助에 의한 활동으로 실시할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③ 給食費補助는 수준높은 민간단체의 아동복지활동이라고 여겨진다. 企業家나 후원자들이 도움을 더 많이 받아 독립된 프로그램으로써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④ 離婚父母의 子女相談은 法律的 知識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有意義한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진다.

財政이나 실시요원의 數를 더 확보하여 離婚家庭뿐 아니라 결혼가정을 相談對象의 범주에 넣어 이 활동을 확대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면 한다.

⑤ 고아를 대상으로 한 學習지도는 一般 兒童보다 成就動機가 부족한 상태에 있으므로 좋은 아동복지활동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진다.

문제는 自願者의 積極적 참여인데 이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⑥ 유치원이나 託兒院의 운영은 이미 하나의 兒童福祉活動으로 정착된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는 방안으로 託兒院의 경우 時間制에 의한 託兒院 운영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⑦ 무의촌 진료사업은 지금 1개의 단체에서 軍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女醫師會 女藥師會 助産協會등 醫學과

관련있는 女性團體와 협조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시켜 더 많은 무의촌지역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⑧ 놀이터 施設補助도 현재는 한 단체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기부하고 있는데 모금활동 등에 의한 능동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시설을 하여 더 많은 아동이 즐겨놀 수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한다.

4. 예전에 실시하였으나 지금은 중단된 프로그램<표 2>

중단 이유로서는 財源 및 실시요원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財源의 부족때문에 自願者에 의한 활동을 기대하는 것이 용이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개발에 대한 전체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고 보겠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專問社會事業家の 補助役割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할 수 없는 독특한 일을 할 수가 있으며 地域社會와 사회봉사를 위해 보다 효과적일 경우가 많으므로’⁴⁾ 잠재인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1977년도 金永謨가 사회사업을 위한 서울市民的 可用資源을 조사하였을 때 참여 가능성이 52.8%로 나타난 것⁵⁾을 보면 여성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실시요원의 부족현상은 중당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財源의 부족현상도 YWCA와 Girl Scout를 제외한 모든 여성단체가 겪고 있는데 YWCA가 오래 전부터 채택하고 있는 회원 모금제 및 여성단체는 아니지만 대한 결핵 협회, 대한나협회, 양연회, 중앙청소년보호

대책협의회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금운동, 부속교실의 운영등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모금운동은 현행 法制상 아주 까다로와, 한 여성단체가 실시하기는 어려우나 女性團體協議會와 같은 共同組織體를 활용하여 명분있는 아동복지활동을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지금 실시중이나 폐지하고 싶은 아동복지활동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소기의 成果를 거두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앞으로 여성단체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아동복지증진에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 것이라고 본다.

5. 앞으로 계획중인 아동복지활동 프로그램<표 3>

① 兒童保護法 制定촉구; 사회변화에 따른 性의 해방 및 개방등으로 早婚, 未婚父母의 증가현상이 일어나 미숙한 양육 및 경제적 곤란등의 이유로 아동을 학대하고 遺棄, 遺棄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른 예방적인 좋은 아동복지활동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진다.

또 이와 같은 현상에 따른 아동고발센터가 韓國社會福祉協議會에 개설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兒童福利法과 未成年者保護法에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나 1978년도 李素希의 兒童福祉制度의 比較考察에서도 지적하였듯이⁶⁾ 별개의 兒童保護法을 制定하는 것보다 未成年者保護法과 兒童福利法을 修定補完하여 총괄적인 兒童福利法을 만들어 이 法속에 兒童의 학대에 따른 法的 조항을 제시하였으면

4) 金永謨, 사회복지의 자주적 모색, 평민서당, 서울, 1978, p.63

5) 韓國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를 위한 民間資源의 社員可謨에 관한 연구 서술, 1977, p.103

6) 李素希, 兒童福祉制度의 比較考察 1978, 淑大 碩士論文 pp.28~29

한다.

② 놀이지도; 自願者의 적극적인 참여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할 프로그램이다.

③ 國際親善 어린이 藝術大會; 一般兒童의 예술을 통한 心身發達과 세계文化의 국제교류라는 점에서 의의있는 활동이며 兒童에 대한 社會 및 세계의 福祉意識을 고취시키는 데로 이바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지며 행정기관 및 메스컴의 지원이 요청된다고 본다.

④ 特殊대원의 야영대회; 肢體不自由兒童을 위한 行事로서는 현재 正立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體育大會가 있을 뿐인데 좋은 특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진다.

한국 걸스카웃에서 계획중인데 다른 여성단체에서도 肢體不自由兒童에 대한 관심을 가져 활동의 폭을 넓혔으면 좋을 것 같다.

⑤ 결손가정의 아동을 위한 委託保護;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은 전문사회사업기관에서 행해 왔으며 또 프로그램의 성격상 전문사회사업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복지활동은 社會事業家, 心理學者, 醫師, 카운슬러등 여러 전문가에 의한 종합적인 처치에 의해 진단되고 위탁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활동은 전문기관과의 협조형태로서 종합적 진단에 의한 委託家庭의 알선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7. 아동복지활동을 위한 諸 要件

예전에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프로그램에서 논의하였고 自願者 動員에 있어서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自願者 養成 教育을 실시 중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여성

단체에서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自體 活動을 위한 人力動員에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한다.

이것은 이 자체로서도 훌륭한 아동복지활동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또 인력조달 방안도 되기 때문이다.

8. 他 단체와의 협조여부에서는 협조를 원하는 단체는 3개 단체로서 배타적인 경향을 보여 주었다.

물론 각 단체마다 고유의 사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共同의 노력에 의한 활동을 모색하는 것도 의의있으리라고 본다.

9. 모금활동의 실시여부에서는 3개 단체가 응답하였으며 활동내용도 미비하였다. 외국의 민간단체에서는 共同募金運動을 전개하여 대규모적인 사업으로 아동복지증진에 공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에서 共同募金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1923년 일본의 長崎市에서 위생조합과 부인단체의 100명을 모금위원으로 위촉하여 戶別募金 및 法人募金을 실시하여 모은 금액을 長崎市內에 있는 社會福祉施設과 단체에 배분하였듯이⁷⁾ 우리나라의 여성단체에서도 市, 道와 협력하여 모금운동의 一員으로 참가하여 간접적인 아동복지활동은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V. 結論 및 提言

單純社會였던 지난날에는 개인이 충족할 수 없었던 욕구나 도움을 이웃이나 친척에 의하여 해결하여 왔으나 지금과 같이 사회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복잡해지는 시대에는 개인의 욕구충족이나 적응과정이 새로운 측

7) 金範洙,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공동모금활동의 실태와 방향모색, 강남 사회복지학교 사회사업 2호 1977, p.37

면에 의해 모색되어져야 한다.

즉 여러 人的 物的 資源을 통합 조직하여 상호작용에 의한 自發的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문제는 아동이 아직 未熟한 단계에 있어 자신의 生存과 權益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까닭으로 관심있는 어른에 의해 또는 이들의 조직체에 의해 돌보아져 왔다.

여성 단체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동 복지 활동에 노력하여 그 일익을 담당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어느 누구보다도 女性은 兒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1차적인 양육 책임을 지므로 아동에 대한 관심도 및 활동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의 활동면보다 관심도가 낮았다.

물론 각 여성 단체는 그 단체의 設立趣旨가 있고 目的이 있겠으나 일부 여성 단체에서는 아동 문제가 여성 문제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 펴 유감된 일이었으나 한편으로는 財源이나 실시要員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중인 활동을 중단할 의향이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계획까지 마련하고 있는 일은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보서는 미미한 활동이지만 일부 단체는 수준 높은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계획중인 활동도 기대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 단체의 활동이 기대되며 한층 밝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여성 단체의 활동 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실험적 提案을 하면 아래와 같다.

1. 우선 아동 문제가 여성 문제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함을 증시하여 여성 단체의 공동 노력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

야겠으며 韓國女性團體協議會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면 한다.

2. 자기 단체의 要員 부족 현상도 해결할 뿐 아니라 현재 社會福祉協議會에서 실시하고 있는 自願者 모집 및 훈련같은 프로그램도 계획하여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人的資源確保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3. 현행 法規內에서 공동 모금이 하나의 여성 단체만으로는 어렵겠으나 女性團體協議會같은 기구를 잘 활용하여 부족한 재원도 일부 보조받고 또 아동 복지 활동을 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형식은 취해도 좋을 것이며 또 각종 모금을 위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회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뜻있는 아동 복지 활동이 될 것이다.

4. 소비자 고발센터처럼 아동 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아동에 관계되는 모든 사회의 고발을 접수하여 관계 기관에 진정 해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5. T.V.나 방송, 신문, 잡지 등에 모니터 제도를 두어 메스컴이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바를 체크하여 바람직한 교육매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면 한다.

6. 부모 교육을 위한 부속 교실을 운영하여 시대에 맞는 子女觀, 教育觀 정립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7. 家族法처럼 아동의 福祉와 權益을 도모할 수 있는 法的조치를 사회 행동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면 한다(兒童福祉法의 改定, 母子保健法 改定, 母子福祉法의 制定, 養育手當 및 出產手當制度의 도입 등등).

8. 어린이날이나 어린이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아동 보호캠페인을(여성 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1달에 1번씩 主題를 선정하여 방송매체를 통하든지 윤번제로 가두캠페인) 벌였으면 한다.

9. 세미나, 심포지움, 實態調査 등을 실시하여 아동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

고 意識의 變化를 유도하여 政策的 배려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으면 한다.

10. 마을 어머니회, 여성 단체의 支部, 관할 洞會와 區廳 등과 유기적인 關係를 맺어 地域社會의 諸問題—특히 여성 문제와 아동 문제—를 提議하여 示正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役割을 擔當하였으면 한다.

지역社會의 발전이 곧 가정과 우리들 자신의 文化的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Brian O'connel 著 한국사회복지협의회編, 民間福祉團體의 運營入門, 1978.
2. Paul Adams 外 4人, Children's Rights, Peger New York, 1974.
3. LELA B. Costin, Child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 McGraw-hill, 1972.
4. 인효재, '여성은 지역社會의 주인이다', 이대 여성자원개발연구소, 1973.